

2023년도 대덕구 자체 특정감사 결과 공개



대 덕 구
감 사 실

2023년도 대덕구 자체 특정감사 결과 공개

▷ 2023년도 대덕구 자체 특정감사 결과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체 감사 규칙」 제19조(감사결과의 공개)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공개

I 감사개요

- (감사분야) 2개 분야 / 출장여비·공용차량
- (감사방법) 서면감사
- (감사인원) 감사실장 등 8명
- (감사대상) 전 부서 /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및 동
- (감사기간) 2023. 7. 10.(월) ~ 2023. 8. 9.(수) / 23일간
- (대상기간) ┌ 출장여비 2022. 1. 1. ~ 2023. 05. 31. / 516일간
└ 공용차량 2021. 1. 1. ~ 2023. 05. 31. / 881일간

II 감사결과

□ 총 괄

구분	행정상(건)				재정상 (건/원)	비고
	본 처 분					
	계	권고	주의	시정		
계	350	1	64	285	285 / 2,850,000	
출 장 여 비	285	-	-	285	285 / 2,850,000	
공 용 차 량	65	1	64	-	-	

□ 총 평

- 2023년도 특정감사는 출장 여비 지급 적정 여부 및 공용차량 관리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업무개선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함.

○ (출장 여비 분야)

- 2022년도에 출장 여비 관련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에 대해 출장 여비를 착오 지급한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착오 지급분에 대하여 재정상 285건 2,850,000원을 환수 조치하겠음.
 - 출장 여비에 대한 지속적인 특정감사 실시로 직원들의 경각심과 인식이 개선되어 적발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의 과다 적발 사례가 발생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교육 후 결과 보고서 제출조치 하겠음.
- ※ 향후 중복 적발 시(명단 관리) 문책하고자 함.

○ (공용차량 분야)

- 대덕구 소속 전체 공용차량에 대한 차량 관리 및 운행 실태 등을 감사한 결과 공용차량은 총 112대이며, 전반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 일부 부서에서는 공용차량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사고 보고 및 차량 점검 등에 소극적이거나 기존의 관행에 따라 관리된 것으로 보임.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인 정기검사 및 기록관리 소홀 등 본처분 64건(주의 64건)을 적발하였으며, 공용버스 2대에 대한 운전 직의 균형있는 사무분장 및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음.
- 아울러, 차량 총괄부서(총무과)에서는 연 1회 이상 차량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각 단위부서장은 공용차량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주요 지적사항

① 출장 여비 / 285건

- 출장 시간 내 전자문서 로그인 기록 / 198건
- 공용차량 이용 시 1만 원 미감액 / 87건

② 공용차량 / 65건

○ 정기검사 / 10건

- 정기검사를 지연하여 검사만료일까지 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음.

○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 / 23건

-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처분받음.

○ 사고 미보고 / 6건

- 공용차량 사고 후 차량 총괄부서인 총무과에 보고를 하지 않음.

○ 기록관리 소홀 / 20건

- 관련 서식(은행일지, 유류수불대장, 정비대장 등) 미작성 등 기록관리에 소홀히 하였음.

○ 지도·점검·교육 미실시 / 5건

- 공용차량 관리·운영 및 운전원에 대한 지도·점검·교육을 소홀히 하였음.

○ 업무의 분장

- 총무과에서는 區 소유의 2대 버스(대형·중형) 관리·운영을 위하여 3명의 운전직을 사무분장 하였으나, 버스 운행 일수·운행 거리·다른 운전직과의 업무량 등을 종합하여 적정한 운전직 소요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III

공개내용

○ 대덕구 자체 특정감사 결과, 본처분 65건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상호·성명 등은 비공개

NO. 1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관련 서식(배차신청서, 유류수불대장, 운행일지, 정비대장)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용차량 운행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주유 후 유류수불대장에 주유 금액 및 급유량을 작성하지 않는 등 기록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기록관리 현황

(2021. 01. 01. ~ 2023. 5. 31.)

연 번	일 시	차 량 번 호	운 전 자	비 고
1	2022-02-10	9○○○○○○○	임○○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관명] ○○○

[제목] 공용차량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주의의무)에 따르면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표]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연번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부과금액
1	80000000	문○○	2021-06-25	속도위반(20km/H이하)	32,000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3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관련 서식(배차신청서, 유류수불대장, 운행일지, 정비대장)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2021. 1 ~ 2023. 5. 기간동안 공용(전기)차량을 운행하면서 3회(2021.11.13. / 2022.05.30. / 2022.06.22.)를 제외하고 충전 후 충전대장에 충전 금액 및 충전량을 작성하지 않는 등 기록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관명] ○○○

[제목] 공용차량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주의의무)에 따르면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표]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연번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부과금액
1	00000000	강○○	2021-06-30	주정차위반	32,000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관련 서식(배차신청서, 유류수불대장, 운행일지, 정비대장)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용차량 운행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주유 후 유류수불대장에 주유 금액 및 급유량을 작성하지 않는 등 기록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기록관리 현황

(2021. 01. 01. ~ 2023. 5. 31.)

연 번	일 시	차 량 번 호	운 전 자	비 고
1	2022-01-28	80000000	박○○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2	2022-04-22	80000000	박○○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관련 서식(배차신청서, 유류수불대장, 운행일지, 정비대장)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2021. 1 ~ 2023. 5. 기간동안 공용(전기)차량을 운행하면서 충전 후 충전대장에 충전 금액 및 충전량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 또한, 아래 [표]와 같이 공용차량 운행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주유 후 유류 수불대장에 주유 금액 및 급유량을 작성하지 않는 등 기록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기록관리 현황

(2021. 01. 01. ~ 2023. 5. 31.)

연 번	일 시	차 량 번 호	운 전 자	비 고
1	2021-12-15	90000000	변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2	2022-06-22	90000000	변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3	2023-01-19	90000000	백00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7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주의의무)에 따르면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표]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연번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부과금액
1	9○○○○○○○	변○○	2022-03-29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위반(20km/H이하)	56,000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정기검사 지연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에 따르면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또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근무지침)에 따라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차량 정기검사를 지연하여 검사만료일 까지 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정기검사 지연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원)

연번	차량번호	정기검사만료일	정기검사일	지연일수	과태료부과액
1	80000000	2021. 4. 16.	2021. 5. 26.	9일	16,000

※ 2022. 4. 14. 자동차관리법 개정, 정기검사 지연일수 30일 이내 과태료 부과액 변경
(종전: 20,000원 ⇒ 변경: 40,000원) , 사전납부 20%감경 적용

[조치할 사항]

[주의] 000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사고발생 미보고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9조(사고보고)에 따르면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경위에 대해 차고장 또는 차량 총괄부서(총무과)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용차량 사고 후 차량 총괄부서인 총무과에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사고 및 보고 현황

(2021. 01. 01. ~ 2023. 5. 31.)

연번	일시	차량번호	운전자	사고장소	사고원인	비고
1	2021-01-01	8○○○○○○○	송○○	대덕구 비래동 비래초등학교 앞	눈길 미끄러짐	
2	2022-02-07	0○○○○○○○	김○○	대덕구 오정동 대덕구청 주차장	운전미숙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관련 서식(배차신청서, 유류수불대장, 운행일지, 정비대장)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용차량 운행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기록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기록관리 현황

(2021. 01. 01. ~ 2023. 5. 31.)

연 번	일 시	차 량 번 호	운 전 자	비 고
1	2021-01-01	80000000	송○○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2	2022-02-07	00000000	김○○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관명] ○○○

[제목] 공용차량 안전교육 미실시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0조(안전교육 등)에 따르면 단위부서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2년도 공용차량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미실시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안전교육 실시 현황

(2021. 1. 1. ~ 2023.5.31.)

부서명	연도별	교육 실시 여부	비 고
○○○	2021	실시	
	2022	미실시	
	2023	실시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관명] ○○○

[제목] 공용차량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주의의무)에 따르면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표]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연번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부과금액
1	00000000	김○○	2023-01-03	신호 또는 지시 위반	70,000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정기검사 지연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에 따르면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또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근무지침)에 따라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차량 정기검사를 지연하여 검사만료일 까지 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정기검사 지연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원)

연번	차량번호	정기검사만료일	정기검사일	지연일수	과태료부과액
1	80000000	2021. 4. 16.	2021. 5. 27.	10일	16,000

※ 2022. 4. 14. 자동차관리법 개정, 정기검사 지연일수 30일 이내 과태료 부과액 변경
(종전: 20,000원 ⇒ 변경: 40,000원) , 사전납부 20%감경 적용

[조치할 사항]

[주의] 000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14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관명] ○○○

[제목]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관련 서식(배차신청서, 유류수불대장, 운행일지, 정비대장)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2021. 1 ~ 2023. 5. 기간동안 공용(전기)차량을 운행하면서 충전 후 충전대장에 충전 금액 및 충전량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 또한, 아래 [표]와 같이 공용차량 운행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기록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기록관리 현황

(2021. 01. 01. ~ 2023. 5. 31.)

연 번	일 시	차 량 번 호	운 전 자	비 고
1	2023-01-31	00000000	이○○	차량정비대장 미작성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정기검사 지연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에 따르면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또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근무지침)에 따라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차량 정기검사를 지연하여 검사만료일까지 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정기검사 지연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원)

연번	차량번호	정기검사만료일	정기검사일	지연일수	과태료부과액
1	80000000	2021. 4. 19.	2021. 6. 2.	13일	16,000

※ 2022. 4. 14. 자동차관리법 개정, 정기검사 지연일수 30일 이내 과태료 부과액 변경
(종전: 20,000원 ⇒ 변경: 40,000원) , 사전납부 20%감경 적용

[조치할 사항]

[주의] 000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사고발생 미보고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9조(사고보고)에 따르면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경위에 대해 차고장 또는 차량 총괄부서(총무과)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용차량 사고 후 차량 총괄부서인 총무과에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사고 및 보고 현황

(2021. 01. 01. ~ 2023. 5. 31.)

연번	일시	차량번호	운전자	사고장소	사고원인	비고
1	2021-10-25	00000000	이○○	주차장	부주의 (문콕)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관련 서식(배차신청서, 유류수불대장, 운행일지, 정비대장)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2023. 1 ~ 2023. 5. 기간동안 공용(전기)차량을 운행하면서 충전 후 충전대장에 충전 금액 및 충전량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 또한, 아래 [표]와 같이 공용차량 운행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주유 후 유류 수불대장에 주유 금액 및 급유량을 작성하지 않는 등 기록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기록관리 현황

(2021. 01. 01. ~ 2023. 5. 31.)

연 번	일 시	차 량 번 호	운 전 자	비 고
1	2021-01-08	80000000	강○○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2	2021-10-25	00000000	이○○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관명] ○○○

[제목] 공용차량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주의의무)에 따르면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표]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연번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부과금액
1	○○○○○○○○	송○○	2023-03-14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위반(20km/H이하)	56,000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정기검사 지연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에 따르면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또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근무지침)에 따라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차량 정기검사를 지연하여 검사만료일 까지 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정기검사 지연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원)

연번	차량번호	정기검사만료일	정기검사일	지연일수	과태료부과액
1	90000000	2023. 4. 13.	2023. 5. 19.	5일	32,000 (부과예정)

※ 2022. 4. 14. 자동차관리법 개정, 정기검사 지연일수 30일 이내 과태료 부과액 변경
(종전: 20,000원 ⇒ 변경: 40,000원) , 사전납부 20%감경 적용

[조치할 사항]

[주의] 000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관련 서식(배차신청서, 유류수불대장, 운행일지, 정비대장)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용차량 운행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주유 후 유류수불대장에 주유 금액 및 급유량을 작성하지 않는 등 기록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기록관리 현황

(2021. 01. 01. ~ 2023. 5. 31.)

연 번	일 시	차 량 번 호	운 전 자	비 고
1	2022-03-07	9○○○○○○○	장○○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2	2022-10-13	9○○○○○○○	김○○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3	2022-12-06	9○○○○○○○	김○○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관명] ○○○

[제목] 공용차량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주의의무)에 따르면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표]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연번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부과금액
1	9○○○○○○○	장○○	2022-05-03	주정차위반	96,000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정기검사 지연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에 따르면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또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근무지침)에 따라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차량 정기검사를 지연하여 검사만료일 까지 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정기검사 지연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원)

연번	차량번호	정기검사만료일	정기검사일	지연일수	과태료부과액
1	80000000	2021. 4. 16.	2021. 6. 8.	22일	16,000

※ 2022. 4. 14. 자동차관리법 개정, 정기검사 지연일수 30일 이내 과태료 부과액 변경
(종전: 20,000원 ⇒ 변경: 40,000원) , 사전납부 20%감경 적용

[조치할 사항]

[주의] 000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관명] ○○○

[제목] 공용차량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주의의무)에 따르면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표]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연번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부과금액
1	80000000	정○○	2021-04-28	속도위반(20km/H이하)	32,000
2	80000000	신○○	2023-03-16	속도위반(20km/H이하)	32,000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정기검사 지연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에 따르면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또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근무지침)에 따라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차량 정기검사를 지연하여 검사만료일 까지 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정기검사 지연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원)

연번	차량번호	정기검사만료일	정기검사일	지연일수	과태료부과액
1	90000000	2021. 4. 14.	2021. 6. 4.	20일	16,000

※ 2022. 4. 14. 자동차관리법 개정, 정기검사 지연일수 30일 이내 과태료 부과액 변경
(종전: 20,000원 ⇒ 변경: 40,000원) , 사전납부 20%감경 적용

[조치할 사항]

[주의] 000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관련 서식(배차신청서, 유류수불대장, 운행일지, 정비대장)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용차량 운행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주유 후 유류수불대장에 주유 금액 및 급유량을 작성하지 않는 등 기록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기록관리 현황

(2021. 01. 01. ~ 2023. 5. 31.)

연번	일시	차량번호	운전자	비고
1	2022-07-11	20000000	김○○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2	2022-12-07	20000000	강○○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주의의무)에 따르면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표]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연번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부과금액
1	4○○○○○○○	오○○	2021-11-24	신호 또는 지시 위반	70,000
2	2○○○○○○○	유○○	2022-12-13	속도위반(20km/H이하)	40,000
3	2○○○○○○○	김○○	2022-05-31	주정차위반	40,000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관명] ○○○

[제목] 공용차량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주의의무)에 따르면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표]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연번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부과금액
1	4○○○○○○○	박○○	2021-10-18	속도위반(20km/H이하)	32,000
2	5○○○○○○○	박○○	2022-06-14	속도위반(20km/H이하)	32,000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정기검사 지연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에 따르면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또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근무지침)에 따라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차량 정기검사를 지연하여 검사만료일까지 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정기검사 지연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원)

연번	차량번호	정기검사만료일	정기검사일	지연일수	과태료부과액
1	90000000	2023. 3. 16.	2023. 4. 20.	4일	32,000
2	80000000	2023. 4. 9.	2023. 5. 18.	8일	32,000 (부과예정)

※ 2022. 4. 14. 자동차관리법 개정, 정기검사 지연일수 30일 이내 과태료 부과액 변경
(중전: 20,000원 ⇒ 변경: 40,000원) , 사전납부 20%감경 적용

[조치할 사항]

[주의] 000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관명] ○○○

[제목] 공용차량 사고발생 미보고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9조(사고보고)에 따르면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경위에 대해 차고장 또는 차량 총괄부서(총무과)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용차량 사고 후 차량 총괄부서인 총무과에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사고 및 보고 현황

(2021. 01. 01. ~ 2023. 5. 31.)

연번	일시	차량번호	운전자	사고장소	사고원인	비고
1	2021-01-18	8○○○○○○○	이○○	동구 흥도동 지하차도 공사구간	공사구간에서 쌍방접촉	
2	2023-02-17	9○○○○○○○	박○○	대덕구 중리동 하나로병원	정차 중 사고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관련 서식(배차신청서, 유류수불대장, 운행일지, 정비대장)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용차량 운행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주유 후 유류수불대장에 주유 금액 및 급유량을 작성하지 않은 등 기록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붙임]과 같이 총 33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동일 시간에 2대 이상의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등 차량운행일지 작성 및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기록관리 현황

(2021. 01. 01. ~ 2023. 5. 31.)

연번	일시	차량번호	운전자	비고
1	2021-09-23	80000000	홍○○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2	2021-06-25	90000000	서○○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연번	일시	차량번호	운전자	비고
3	2021-10-01	90000000	박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4	2022-08-02	90000000	박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5	2022-11-10	90000000	박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6	2023-04-19	90000000	박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7	2021-11-15	90000000	홍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8	2021-07-27	80000000	임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조치할 사항]

[주의] 000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주의의무)에 따르면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표]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연번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부과금액
1	9○○○○○○○	박○○	2021-08-12	속도위반(20km/H이하)	32,000
2	9○○○○○○○	박○○	2023-01-12	속도위반(20km/h초과 40km/h이하)	70,000
3	9○○○○○○○	오○○	2023-03-08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위반(20km/H이하)	56,000
4	9○○○○○○○	오○○	2023-03-30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위반(20km/H이하)	56,000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관명] ○○○

[제목] 공용차량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주의의무)에 따르면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표]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연번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부과금액
1	9○○○○○○○	강○○	2021-08-11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130,000
2	9○○○○○○○	강○○	2022-05-21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위반(20km/H이하)	56,000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관명] ○○○

[제목] 공용차량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주의의무) 및 제 32조(차량직접운전)에 따르면 직접운전 운행자는 운전 중 항상 도로 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표]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연번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부과금액
1	70000000	이○○	2021-03-05	끼어들기 금지위반	40,000
2	80000000	김○○	2021-06-16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위반(20km/H이하)	56,000
3	80000000	양○○	2022-09-23	속도위반(20km/H이하)	32,000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정기검사 지연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에 따르면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또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근무지침)에 따라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차량 정기검사를 지연하여 검사만료일까지 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정기검사 지연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원)

연번	차량번호	정기검사만료일	정기검사일	지연일수	과태료부과액
1	70000000	2021. 10. 4.	2021. 11. 11.	7일	16,000

※ 2022. 4. 14. 자동차관리법 개정, 정기검사 지연일수 30일 이내 과태료 부과액 변경
(종전: 20,000원 ⇒ 변경: 40,000원) , 사전납부 20%감경 적용

[조치할 사항]

[주의] 000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관련 서식(배차신청서, 유류수불대장, 운행일지, 정비대장)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용차량 운행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주유 후 유류수불대장에 주유 금액 및 급유량을 작성하지 않는 등 기록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기록관리 현황

(2021. 01. 01. ~ 2023. 5. 31.)

연번	일시	차량번호	운전자	비고
1	2023-05-26	80000000	주○○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2	2021-06-30	20000000	김○○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3	2022-10-13	20000000	박○○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4	2022-12-14	20000000	박○○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연번	일시	차량번호	운전자	비고
5	2023-01-18	20000000	최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6	2023-05-16	20000000	박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7	2022-07-26	80000000	박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8	2023-02-03	80000000	박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9	2023-02-27	80000000	박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10	2023-05-09	80000000	박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11	2021-05-28	70000000	김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12	2022-04-01	80000000	박00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조치할 사항]

[주의] 000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관명] ○○○

[제목] 공용차량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주의의무)에 따르면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표]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연번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부과금액
1	9○○○○○○○	송○○	2022-07-27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위반(20km/H이하)	56,000
2	9○○○○○○○	송○○	2022-08-04	속도위반(20km/H이하)	32,000
3	9○○○○○○○	송○○	2022-10-26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위반(20km/H이하)	56,000
4	8○○○○○○○	박○○	2022-04-01	속도위반(20km/H이하)	32,000
5	2○○○○○○○	김○○	2023-03-14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위반(20km/H이하)	56,000

연번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부과금액
6	20000000	김00	2023-03-20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위반(20km/H이하)	56,000

[조치할 사항]

[주의] 000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관명] ○○○

[제목] 공용차량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주의의무)에 따르면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표]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연번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부과금액
1	3○○○○○○○	노○○	2021-12-31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130,000
2	4○○○○○○○	오○○	2022-04-11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위반(20km/H이하)	56,000
3	4○○○○○○○	오○○	2022-08-26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위반(20km/H이하)	72,100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안전교육 미실시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0조(안전교육 등)에 따르면 단위부서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1년도 공용차량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미실시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안전교육 실시 현황

(2021. 1. 1. ~ 2023.5.31.)

부서명	연도별	교육 실시 여부	비 고
○○○	2021	미실시	
	2022	실시	
	2023	실시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관명] ○○○

[제목] 공용차량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주의의무)에 따르면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표]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연번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부과금액
1	10000000	안○○	2022-12-08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130,000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사고발생 미보고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9조(사고보고)에 따르면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경위에 대해 차고장 또는 차량 총괄부서(총무과)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용차량 사고 후 차량 총괄부서인 총무과에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사고 및 보고 현황

(2021. 01. 01. ~ 2023. 5. 31.)

연번	일시	차량번호	운전자	사고장소	사고원인	비고
1	2021-03-31	1○○○○○○○○	이○○	대덕구 오정동	전방주시태만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관련 서식(배차신청서, 유류수불대장, 운행일지, 정비대장)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용차량 정비 후 차량정비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기록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기록관리 현황

(2021. 01. 01. ~ 2023. 5. 31.)

연번	일시	차량번호	운전자	비고
1	2021-03-31	1○○○○○○○○	이○○	차량정비대장 미작성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주의의무)에 따르면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표]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연번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부과금액
1	50000000	김○○	2021-09-16	속도위반(20km/H이하)	32,000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안전교육 미실시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0조(안전교육 등)에 따르면 단위부서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용차량 사고 후 차량 총괄부서인 총무과에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안전교육 실시 현황

(2021. 1. 1. ~ 2023.5.31.)

부서명	연도별	교육 실시 여부	비 고
○○○	2021	실시	
	2022	미실시	
	2023	실시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관명] ○○○

[제목]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관련 서식(배차신청서, 유류수불대장, 운행일지, 정비대장)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용차량 운행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기록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기록관리 현황

(2021. 01. 01. ~ 2023. 5. 31.)

연 번	일 시	차 량 번 호	운 전 자	비 고
1	2023-05-14	40000000	김○○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주의의무)에 따르면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표]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연번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부과금액
1	4○○○○○○○	김○○	2023-05-14	속도위반(20km/H이하)	32,000
2	8○○○○○○○	설○○	2021-04-23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위반(20km/H이하)	56,000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정기검사 지연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에 따르면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또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근무지침)에 따라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차량 정기검사를 지연하여 검사만료일까지 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정기검사 지연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원)

연번	차량번호	정기검사만료일	정기검사일	지연일수	과태료부과액
1	80000000	2021. 11. 10.	2021. 12. 16.	5일	16,000
2	80000000	2022. 12. 16.	2023. 1. 26.	10일	32,000

※ 2022. 4. 14. 자동차관리법 개정, 정기검사 지연일수 30일 이내 과태료 부과액 변경
(중전: 20,000원 ⇒ 변경: 40,000원) , 사전납부 20%감경 적용

[조치할 사항]

[주의] 000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관련 서식(배차신청서, 유류수불대장, 운행일지, 정비대장)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용차량 운행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주유 후 유류수불대장에 주유 금액 및 급유량을 작성하지 않는 등 기록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기록관리 현황

(2021. 01. 01. ~ 2023. 5. 31.)

연번	일시	차량번호	운전자	비고
1	2021-08-27	80000000	강○○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2	2021-11-02	80000000	강○○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안전교육 미 실시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0조(안전교육 등)에 따르면 단위부서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1년도 공용차량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미 실시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안전교육 실시 현황

(2021. 1. 1. ~ 2023.5.31.)

부서명	연도별	교육 실시 여부	비고
○○○	2021	미 실시	
	2022	실시	
	2023	실시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주의의무)에 따르면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표]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연번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부과금액
1	4○○○○○○○	김○○	2021-06-25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130,000
2	8○○○○○○○	김○○	2023-02-27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위반(20km/H이하)	56,000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관명] ○○○

[제목] 공용차량 사고발생 미보고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9조(사고보고)에 따르면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경위에 대해 차고장 또는 차량 총괄부서(총무과)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용차량 사고 후 차량 총괄부서인 총무과에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사고 및 보고 현황

(2021. 01. 01. ~ 2023. 5. 31.)

연번	일시	차량번호	운전자	사고장소	사고원인	비고
1	2023-05-04	8○○○○○○○	임○○	대덕구 오정로77번길 18	좁은 골목길 구조물 접촉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관련 서식(배차신청서, 유류수불대장, 운행일지, 정비대장)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용차량 운행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주유 후 유류수불대장에 주유 금액 및 급유량을 작성하지 않는 등 기록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기록관리 현황

(2021. 01. 01. ~ 2023. 5. 31.)

연번	일시	차량번호	운전자	비고
1	2022-08-11	80000000	김○○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2	2023-01-17	80000000	양○○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3	2023-03-09	80000000	양○○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4	2023-04-19	80000000	양○○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연번	일시	차량번호	운전자	비고
5	2023-05-24	80000000	양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6	2021-06-16	80000000	조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7	2023-04-25	80000000	임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8	2023-05-19	80000000	이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9	2022-07-21	40000000	배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10	2022-12-09	40000000	서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조치할 사항]

[주의] 000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관명] ○○○

[제목]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관련 서식(배차신청서, 유류수불대장, 운행일지, 정비대장)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용차량 운행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기록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기록관리 현황

(2021. 01. 01. ~ 2023. 5. 31.)

연번	일시	차량번호	운전자	비고
1	2022-04-19	6○○○○○○	최○○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관명] ○○○

[제목] 공용차량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주의의무)에 따르면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표]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연번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부과금액
1	6○○○○○○○	최○○	2022-03-15	속도위반(20km/H이하)	32,000
2	6○○○○○○○	최○○	2022-03-15	속도위반(20km/H이하)	32,000
3	6○○○○○○○	최○○	2022-04-19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위반(20km/H이하)	56,000
4	6○○○○○○○	최○○	2022-10-26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위반(20km/H이하)	56,000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관명] ○○○

[제목]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관련 서식(배차신청서, 유류수불대장, 운행일지, 정비대장)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용차량 운행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주유 후 유류수불대장에 주유 금액 및 급유량을 작성하지 않는 등 기록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기록관리 현황

(2021. 01. 01. ~ 2023. 5. 31.)

연번	일시	차량번호	운전자	비고
1	2022-09-22	00000000	연○○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2	2022-12-27	00000000	연○○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주의의무)에 따르면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표]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연번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부과금액
1	70000000	연○○	2021-03-26	주정차위반	40,000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정기검사 지연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에 따르면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또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근무지침)에 따라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차량 정기검사를 지연하여 검사만료일까지 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정기검사 지연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원)

연번	차량번호	정기검사만료일	정기검사일	지연일수	과태료부과액
1	70000000	2022. 12. 20.	2023. 1. 30.	10일	32,000

※ 2022. 4. 14. 자동차관리법 개정, 정기검사 지연일수 30일 이내 과태료 부과액 변경
(종전: 20,000원 ⇒ 변경: 40,000원) , 사전납부 20%감경 적용

[조치할 사항]

[주의] 000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관련 서식(배차신청서, 유류수불대장, 운행일지, 정비대장)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정비하였음에도 차량정비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또한, [표2]와 같이 공용차량 운행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주유 후 유류수불대장에 주유 금액 및 급유량을 작성하지 않는 등 기록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1] 공용차량 정비대장 현황

(2021. 01. 01. ~ 2023. 5. 31.)

연 번	일 시	차 량 번 호	운 전 자	비 고
1	2021-04-27	40000000	최○○	차량정비대장 미작성

[표2] 공용차량 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현황

(2021. 01. 01. ~ 2023. 5. 31.)

연 번	일 시	차 량 번 호	운 전 자	비 고
1	2022-11-17	30000000	이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2	2021-05-11	70000000	이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3	2021-06-24	70000000	이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4	2021-10-01	70000000	이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5	2021-11-02	70000000	이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6	2021-08-30	40000000	김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7	2022-02-08	40000000	김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8	2022-06-09	70000000	함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9	2023-03-09	70000000	조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조치할 사항]

[주의] 000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지도·점검 미실시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4조(지도·점검 등)에 따르면 차량 총괄부서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1, 2022년도 단위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미실시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지도·점검 실시 현황

(2021. 1. 1. ~ 2023.5.31.)

부서명	연도별	지도·점검 실시 여부	비 고
○○○	2021	미실시	
	2022	미실시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주의의무)에 따르면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표]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연번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부과금액
1	30000000	하○○	2022-06-19	속도위반(20km/H이하)	32,000
2	50000000	최○○	2022-04-06	속도위반(20km/H이하)	32,000
3	30000000	하○○	2022-07-29	주정차위반	32,000
4	40000000	이○○	2023-03-09	속도위반(20km/H이하)	32,000
5	00000000	이○○	2022-09-06	버스전용차로 위반	50,000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운전직 사무분장 및 공용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권고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업무의 분장)에 따르면 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에서는 공용차량인 버스 2대를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대형 버스는 區 행사 등 업무 지원용으로, 중형버스는 직원 출근용으로 운영 중이며,
- 공용차량인 버스 관리를 위해 대형버스(운전직 2명)와 중형버스(운전직 1명)에 3명의 운전직이 전담으로 관리토록 사무분장으로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2021. 1. ~ 2023. 6. 기간 동안 버스(대형, 중형) 운행 내역과 운전직 사무분장은 아래 [표 1, 2]와 같다.

[표 1] 버스(대형, 중형) 운행 내역

(2021. 1. ~ 2023. 6.)

차량번호	년도	운전자	운행일수	운행거리
70000000 (대형버스)	2021	이00	58회	5,901km
		최00	13회	
	2022	이00	30회	4,918km
		최00	55회	
	2023	이00	7회	2,082km
		최00	26회	
70000000 (중형버스)	2021	최00	193회	7,773km
	2022	최00	82회	7,155km
		문00	103회	
	2023	이00	1회	4,700km
		최00	3회	
		문00	122회	

[표 2] 버스(대형, 중형) 운전직 사무분장

(2021. 1. ~ 2023. 6.)

차량번호	기간	담당자	분장사무
70000000 (대형버스)	2021. 1. 1. ~ 2022. 1. 25.	이00	차량관리(대형버스)
	2022. 1. 26. ~ 2022. 6. 30.	최00	차량관리(대·중형버스)
	2022. 7. 1. ~ 2023. 3. 1.	최00	차량관리(대형버스)
	2023. 3. 2. ~ 2023. 6. 30.	이00	공용차량 운행관리 (대형버스, 업무용차량 지원)
최00		공용차량 운행관리 (대형버스, 업무용차량 지원)	

차량번호	기간	담당자	분장사무
70000000 (중형버스)	2021. 1. 1. ~ 2022. 1. 25.	최○○	차량관리(중형버스, 소형승합)
	2022. 1. 26. ~ 2022. 6. 30.	최○○	차량관리(대·중형버스)
	2022. 7. 1. ~ 2023. 3. 1.	문○○	차량관리(중형버스)
	2023. 3. 2. ~ 2023. 6. 30.	문○○	공용차량 운행관리 (중형버스, 업무용차량 지원)

- <표 1>의 버스 운행 내역을 보면 대형버스(70000000)는 區 행사 시 업무 지원 등으로 사용하면서 2021. 1월부터 2023. 6월까지(30개월) 운행 일수 189회(1개월 평균 6.3회 운행)로, 1개월 평균 20일 근무로 계산하면 2/3는 운행 없이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었다.
- 중형버스(70000000)는 직원 출근용으로 2021. 1월부터 2023. 6월까지(30개월) 운행일수 504회(1개월에 16.8회 운행)로 대형버스보다 운행 일수가 많았으나, 대부분 하루 1회 직원 출근(06:30~08:30, 10명 이내 탑승) 시에만 운행하여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에서는 <표 2>와 같이 2021. 1월부터 현재까지 공용버스에 대한 사무분장으로 2대의 버스에 2021. 1. ~ 2023. 3. 1.까지 2명, 2023. 3. 2.부터 현재까지 운전직 3명에게 관리 및 운행토록 하였으나, 버스 운행 일수, 운행 거리, 다른 운전직과의 업무량 등을 종합하여 적절한 운전직 소요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이에, 고가의 예산을 들여 공용버스 2대를 매입·운영하고 있으나, 장기간 미운행 등 현재의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운전직에 대한 균형있는 사무분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권고] ○○○장은 區 소유의 2대 버스(대형·중형) 관리·운영을 위해 운전
직에 대한 업무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균형있는 사무분장을 하고,
효율적인 공용버스 운영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주의의무)에 따르면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표]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연번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부과금액
1	40000000	이○○	2021-06-02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130,000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관명] ○○○

[제목] 공용차량 운행일지 작성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5조(기록관리) 및 제32조(차량직접운전)에 따라 공용차량 운전원은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하고,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동일인이 동일 시간에 2대 이상의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등 차량운행일지 작성 및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동일인 동일시간 2대 이상 공용차량 운행 현황

(2021. 01. 01. ~ 2023. 5. 31.)

운전자		운행일시	차량운행 내역		
직급	성명		차량번호	운행시간	운행거리(km)
시설8	박○○	2023. 1. 19.	7○○○○○○	10:00 ~ 17:00	65
			9○○○○○○	11:00 ~ 18:00	25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사고발생 미보고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9조(사고보고)에 따르면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경위에 대해 차고장 또는 차량 총괄부서(총무과)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용차량 사고 후 차량 총괄부서인 총무과에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사고 및 보고 현황

(2021. 01. 01. ~ 2023. 5. 31.)

연번	일시	차량번호	운전자	사고장소	사고원인	비고
1	2021-09-30	8○○○○○○○	문○○	대덕구 읍내동 124-3번지	후진 중 기동 접촉	
2	2021-10-07	8○○○○○○○	문○○	대덕구 오정동 448-4번지	기중기로 콘크리트 벽 충격	
3	2021-12-27	8○○○○○○○	이○○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오거리	우회전 시 좌회전 차량과 충돌	
4	2022-08-12	8○○○○○○○	백○○	대덕구 읍내동 읍내사거리	차선변경하던 차량이 충돌	

연번	일시	차량번호	운전자	사고장소	사고원인	비고
5	2022-10-25	90000000	심00	대덕구 법동 유엔아파트 주차장	후진 중 차량 충돌	
6	2023-02-24	80000000	박00	대덕구 읍내동 읍내사거리	우회전 중 앞차 충돌	

[조치할 사항]

[주의] 000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관련 서식(배차신청서, 유류수불대장, 운행일지, 정비대장)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2조(차량직접운전)에 따라 공용차량 운전원은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하고,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용차량 운행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주유 후 유류수불대장에 주유 금액 및 급유량을 작성하지 않는 등 기록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또한, [붙임]과 같이 총 369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동일 시간에 2대 이상의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등 차량운행일지 작성 및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공용차량 기록관리 현황

(2021. 01. 01. ~ 2023. 5. 31.)

연번	일시	차량번호	운전자	비고
1	2023-02-13	80000000	이○○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연 번	일 시	차 량 번 호	운 전 자	비 고
2	2022-11-25	80000000	김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3	2023-03-06	80000000	이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4	2022-10-05	90000000	심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5	2021-12-15	90000000	박00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조치할 사항]

[주의] 000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 결과 처분 통지

[기 관 명] ○○○

[제 목] 공용차량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 행정상 : 주의 / 재정상 : - / 신분상 : -

[지적내용]

□ 현 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주의의무)에 따르면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하며,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표]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연번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부과금액
1	9○○○○○○○	이○○	2021-07-07	신호 또는 지시 위반	70,000
2	8○○○○○○○	문○○	2021-11-03	속도위반(20km/H이하)	40,000
3	9○○○○○○○	심○○	2022-04-12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위반(20km/H이하)	56,000
4	8○○○○○○○	문○○	2022-11-17	버스전용차로 위반	60,000

[조치할 사항]

[주의]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독려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